

 <p><b>거창군</b> Geochang County</p> <p>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p>	<h1>공 보</h1> <p>제926호 2023. 8. 23.(수)</p>	
---	---	---

선 결	기관의 장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23-104호 도로명주소 고시 ..... 2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23-1260호 재결신청사항 열람공고 ..... 3

<b>회 략</b>										
------------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8. 23.

거창군수

###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마상5길 57-119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재결신청사항 열람공고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거창 첨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된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3. 8. 18.

### 거 창 군 수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일반산업단지
  - 명 칭 : 거창 첨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 사업 자 : 거창군수 구인모
3. 위 치 :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47번지 일원
4. 사업면적 : 303,722㎡(사유지 277,272㎡)
5. 공고기간 : 2023. 8. 18. ~ 2023. 9. 4.(14일이상/초일불산입)
6. 관계서류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거 창 군 청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거창군청)경제기업과  
(☎055-940-3363, 사업시행자)
  - 보상 사무소 : 경남 진주시 금산면 갈전길 13-6, 2층(국토보상원)  
(☎055-756-4440, F:055-756-4442)
7. 수용대상 토지 및 물건 : 붙임참조
8. 기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붙임]

□ 토지조서

일련번호	수용할 토지의 표시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경상남도 거창군)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성명	주소 (현주소)	성명	주소 (현주소)	권리의 종류
			공부	실제	공부	편입					
1	남상면 대산리	1420-1	답	답	1,433* 1/2	1,433* 1/2	김만우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565-1 상아맨션에이동 404호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 254-17, A동 404호(상아맨션))			
2	남상면 월평리	1551-1	과	과	7,264* 1/2	7,264* 1/2	박옥제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53-8 에스케이허브스카이 101-1408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웃골길 36-10)			
2	남상면 월평리	1551-1	과	과	7,264* 1/2	7,264* 1/2	박재규	경상남도 마산시 내서읍 삼계리 14 삼계화성타운 103-503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웃골길 36-10)			
3	남상면 대산리	1415	답	답	278	278	정영아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79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 254-17, A동 404호(상아맨션))			
4	남상면 대산리	산147	임	임	76,661	76,661	하양허씨 계달파판 서공관손 종중	경남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131	허태명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구청림길 92-1	대표자

# □ 물건조서

수용할 토지의 표시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경상남도 거창군)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대산리	1420-1	백일홍 H3.0x $\phi$ 50	165주	김만우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 254-17, A동 404호(상아주택)			
		백일홍 H2.5x $\phi$ 30	119주					
		백일홍 H1.5x $\phi$ 20	37주					
		백일홍 H1.0x $\phi$ 20	17주					
		관정 소형 (전기시설포함)	1식					
		관수설비 흑관 $\phi$ 40: 80m 점적호수 20줄	1식					
월평리	1551-1	창고(관리사) 컨테이너, 전기포함	12 $\text{m}^2$	박옥제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옷골길 36-10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21 $\text{m}^2$					
		가추 판넬	21.15 $\text{m}^2$					

수용할 토지의 표시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경상남도 거창군)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월평리	1551-1	창고 목재/판넬	1.32㎡	박옥제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웃골길 36-10			
		물건이전비 분무기, 예초기, 물품 등 일체	1식					
		농사용전기	1식					
		대추나무 H3.0xφ 100	57주					
		대추나무 H3.0xφ 50	9주					
		대추나무 H2.0xφ 50	6주					
		대추나무 H1.5xφ 20	1주					
		자두나무 H4.0xφ 250	5주					
		자두나무 H4.0xφ 200	6주					
		자두나무 H4.0xφ 150	6주					
		자두나무 H4.0xφ 100	1주					
		자두나무 H3.0xφ 150	6주					
		자두나무 H3.0xφ 100	2주					

수용할 토지의 표시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경상남도 거창군)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월평리	1551-1	자두나무 H2.0x $\phi$ 30	1주	박옥제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옷골길 36-10			
		매실나무 H4.0x $\phi$ 100	1주					
		매실나무 H3.0x $\phi$ 100	3주					
		기타수목 H4.0x $\phi$ 250	1주					
		매실나무 H3.0x $\phi$ 150	3주					
		가죽나무 H4.0x $\phi$ 200	11군					
		가죽나무 H2.5x $\phi$ 150	8군					
		가죽나무 H1.5x $\phi$ 200	40군					
		고엽나무 H4.0x $\phi$ 300	1주					
		뽕나무 H8.0x $\phi$ 250	4주					
		두릅나무	20㎡					
		기타수목 H6.0x $\phi$ 250	5주					
		돼지감자	50㎡					
		도라지, 머구 등	50㎡					

# 의견서

제 목		
소유자	성 명	
	주 소	
사 업 시행자	사업자명	거창군수 구인모
	사 업 명	거창 첨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수용대상토지, 물건내역		
의 견		
<p>『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3. . . .</p> <p style="text-align: center;">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전화번호 :</p> <p><b>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귀중</b></p>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li> <li>▶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li> </ul>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열람) ①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재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토지수용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중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그 신청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하여 공고 및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행정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관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그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공고의 내용과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나면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를 지체 없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서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의견서를 수리할 수 있다.